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51
----------	------

2022. 6. 21.(화)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6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6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0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 6월 14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선미 경제기업과장)

###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조문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 충청북도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반영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상위령에 맞게 인용법령 등 변경(안 제2조, 제3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기본법」
-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규정을 신설(안 제5조)
- 충청북도 소상공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안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10조~제1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 가. 제출배경

- 소상공인은 도내 경제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주민의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정책 자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2021년에 「소상공인기본법」이 소상공인 영역에 특화된 기본법으로 제정되어 기존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법의 체계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 법제처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심의위원회 등)은 명칭, 기능 등 지자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조례에 따른 자문기관과 통합 운영할 수 없음”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 검토내용

- 안 제2조 제1호는 소상공인을 정의한 것으로 상위법 제·개정으로 인하여 인용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안 제5조는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본 조항의 신설을 통해 1년 단위의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음
  - 또한, 시행계획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3항의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현황 및 전망, 각종 보호 및 육성 시책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필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이를 통해 소상공인지원 사업 및 정책의 체계성, 일관성 및 지역적 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 제2항은 기존 소상공인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외에 단체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22년 충청북도소상공인연합회 설립과 함께 소상공인의 권익신장 및 보호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9조는 소상공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소상공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으로,

- 충청북도는 기존 위원회의 과잉 설치 방지와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2000년)에 따른 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소상공인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 2010년 법제처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심의위원회 등)은 명칭, 기능 등 지자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조례에 따른 자문기관과 통합 운영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으로 개정을 권고하였음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의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전문성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 ~ 제15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및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다. 종합 검토의견

- 소상공업체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까지 충북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수가 증가해 왔으며, 충북도 사업체의 약 67.7%<sup>1)</sup>를 차지하는 등 도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오고 있는 영역으로 그 중요성은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겪으며, 소상공인은 극한의 어려움속에 내몰리게 되었고 충북도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추진하였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단독 자문기구의 부재는 도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수용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음
- 본 개정을 계기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효과 외에도 충북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대해 정책 및 사업의 일관성, 체계성, 적합성 및 전문성 확보로 도내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도 행정의 신뢰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 충북 전체 사업체 수 : 133,522개(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충북 소상공업체 수 : 90,394개(19년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통계청), 전체 사업체 대비 : 67.7%

○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정 취지 및 내용, 형식의 적절성, 상위법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를 “충청북도”로, “기업 활동”을 “경제활동”으로, “지역경제”를 “균형있는 지역경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4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로 한다.

제3조 중 “제6조제1호”를 “제7조제1호”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수립·시행하는 충청북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7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상공인단체”를 “소상공인 관련단체”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상공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계된 실·국·원 및 본부장(담당관, 과장을 포함한다)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장공인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 5. 31.까지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제6조”를 “제7조”으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제6조 및 제8조”를 “제7조 및 제16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라 <u>충청북도</u>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u>기업</u>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u>지역경제</u>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p> <p>2. (생략)</p> <p>3. “소상공인 관련단체”란 <u>법 제24조</u>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두고 「<u>소득세법</u>」 제168조 또는 「<u>부가가치세법</u>」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u>제6조</u></p>	<p>제1조(목적) ----- <u>충청북도</u>----- ----- ----- <u>경제활동</u>----- ----- <u>균형있는 지역경제</u> ----- -----.</p> <p>제2조(정의) ----- -----.</p> <p>1. ----- 「<u>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 ----- -----.</p> <p>2. (현행과 같음)</p> <p>3. -----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4조-----.</p> <p>제3조(적용범위) ----- ----- ----- ----- -----.</p> <p>제7조제1호-----</p>

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실태조사)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생 략)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생 략)

<신 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해마다 수립·시행하는 충청북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

-----  
-----  
-----  
-----.

② ----- 소  
상공인 관련단체-----

-.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

<신 설>

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상공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관

<신 설>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  
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  
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

<신 설>

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신 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계된 실·국·원 및 본부장(담당관, 과장을 포함한다)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지원 업무 담

<신 설>

제8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의 사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도의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 (생략)

당과장이 된다.

제15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 5. 31.까지로 한다.

제16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

제7조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 제7

조 및 제16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 관련법령 발췌

###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 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9. (생략)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 1. 개정이유

-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소상공인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

## 3. 관련조문

-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4. 추계결과

- 산출과정
  - 협의회 참석위원 연간 수당 : 130,000원\*9명\*연1회 = 1,170천원
  - \* 출석수당 : 기본수당(2시간 이내) 100천원, 초과수당(2시간 초과) 30천원
- 산출과정 : 연간 1,170천원,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5,850천원 소요
- 재원 조달방안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참석위원 수당	5,850	1,170	1,170	1,170	1,170	1,170

## 6. 작성자 : 경제통상국 사회적경제과장 김 선 희(220-2560)